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69
----------	-------

발의연월일 : 2021. 11. 1.

발의자 : 김철민 · 권인숙 · 도종환

박찬대 · 서동용 · 신동근

안민석 · 오영환 · 이탄희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을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으로 한다.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⑤ (현 행과 같음) <u>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 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u> <u>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u> <u>⑧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u> ----- ----- ----- ----- -----. <u>⑨ (현행 제7항과 같음)</u>
⑥ 교육부장관은 <u>해당</u> 대학교 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 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 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